

학생진로심리상담센터 운영 규정

제정 2013. 7. 1. 개정 2014. 3. 1.
개정 2016. 1. 6. 개정 2016. 11. 9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(이하 “대학”)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직면하는 생활과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해 설치한 학생진로심리상담센터(이하 “센터”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6.1.6.>

제 2 조 (업무)

1. 센터는 제 1조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16.1.6., 2016.11.9.>

- ① 인성·적성 검사 등 각종 심리 검사 실시 및 해석
- ② 개인·집단 심리상담 실시
- ③ 신입생 및 재학생 대상 인성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실시
- ④ 교내 자살예방 교육 실시
- ⑤ 학생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
- ⑥ 기타 관련 사업

2. 전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생진로심리상담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)이 따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<신설 2016.11.9.>

제 2 장 조 직

제 3 조 (구성)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성원을 둔다.<개정 2016.1.6.>

1. 센터장 1명(상담에 전문성을 가진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)<개정 2014.3.1., 2016.1.6., 2016.11.9.>

2. 책임교수 및 전문상담원 2명(전문상담원은 관련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)<개정 2016.1.6., 2016.11.9.>

3. 조교 1명(본 대학 규정에 따른다.)

4. 상담위원 약간 명(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)<개정 2016.1.6.>

5. 시간제 상담원을 구성할 수 있다.(시간제 상담원은 관련분야 석사 재학 이상으로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)<신설 2016.11.9.>

제 4 조 (임무)

1. 센터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사업을 주관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<개정 2016.1.6.>
2. 책임교수 및 전문상담원은 센터의 전반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상담업무를 시행한다.<개정 2016.1.6.>
3. 조교는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보조한다.<개정 2016.1.6.>
4. 상담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는 분야에서 학생상담 관련 자문 및 상담에 임한다.<개정 2016.1.6.>
5. 시간제 상담원은 개인상담, 집단상담, 심리검사 업무를 시행한다.<신설 2016.11.9.>

제 3장 운영위원회

제 5 조 (구성)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둘 수 있다.<개정 2016.1.6.>

1.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.
2.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<개정 2016.1.6.>
3. 위원은 전임교수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며, 센터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16.1.6., 2016.11.9.>

제 6 조 (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<개정 2016.11.9.>

제 7 조 (임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<개정 2016.1.6.>
2. 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<개정 2016.1.6.>
3. 센터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<개정 2016.1.6.>
4.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

제 8 조 (위원회 소집 및 의결)

1.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한다.
2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3.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, 간사는 센터 직원으로 한다.<신설 2016.11.9.>

제 4장 회 계

제 9 조 (재정)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본 대학 예산으로 한다.<개정 2016.1.6.>

제 10 조 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 회계연도를 준용한다.<개정 2016.1.6.>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.